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용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16
------	------

발의일자 : 2025. 05. 29.

발 의 자 :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 2) 신 · 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2025. 5. 30.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행정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시설 조성
2. 드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기반 마련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 안전 · 품질 관리
2. 방재 · 재난 대응, 구조 · 구호 활동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진 · 영상 촬영
4. 주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 경기대회 또는 박람회 등 개최
5. 공원 · 산림 · 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6. 토지 측량 및 지적재조사
7.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 측정 등 환경감시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 안전운항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교육

3. 기타 드론 관련 인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